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 2. 2 선고 2020가단20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C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경

변론 종결 2021. 1. 12.

판결 선고 2021.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8,586,96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속초시 E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나.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 인접한 속초시 F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차158호로 원고가 진행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2017. 5.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인접한 피고 소유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손해가 발행하였고, 그 보수공사에 58,586,964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58,586,964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원고에게 2019. 7. 12. 송달되어 2019. 7. 27.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타채712호로 원고의 G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9. 10. 21.58,586,964원의 추심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피고 소유 건물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명령에 기한 추심금 58,586,964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58,586,9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이 사건 공사로 피고 건물에는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해를 입었고, 주식회사 H에게 피고가 의뢰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그 보수비용으로 58,586,964원이 소요되므로, 피고가 위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기판력이 인정되는 확정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돈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 대법원 2001. 11.13. 선고 99다32905 판결 등 참조),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나 지급명령 등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공정증서나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돈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하므로(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신축공사로 인하여 피고 건물에 균열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나. 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을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2.경 주식회사 H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피고 건물에 대한 하자 발생 여부의 조사를 의뢰하였고, 위 회사는 현장조사를 거쳐 피고 건물의 구조체 균열 및 마감재 오염이 발생한 것과 수평변위(수직기울기)가 이 사건 공사 현장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보수비용을 58,586,964원으로 산정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감정기관은 나름의 설비와 규모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감정방법이나 보수비용 산출 과정에 특별히 불합리한 점이 보이지 않는 점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보고서의 결과에 기초하여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추심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에서야 이를 문제삼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피고 건물에 보수비용 58,586,964원이 소요되는 균열 등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지